



코팅머신에 머리가 끼임



재해개요

2023. 5. 6(토) 17:08경 경남 진주시 소재 (주) ooooo에서 (주)oooo 소속 재해자가 코팅머신의 코팅헤드의 블레이드 교체 및 파운틴 립 청소작업 후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에서, 원인미상의 이유로 재해자가 코팅 헤드암과 캐리어벨트 휠 프레임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재해임

(블레이드) 백킹롤에 파운틴 립으로 컬러 잉크를 묻혀 주면 종이 표면을 긁어서 일정한 두께를 만들어 주는 역할

(캐리어벨트 휠) 캐리어벨트의 가이드 역할



<코팅머신의 코팅헤드>



<코팅헤드 상세>

(코팅 헤드암) 블레이드와 백킹롤의 간격을 조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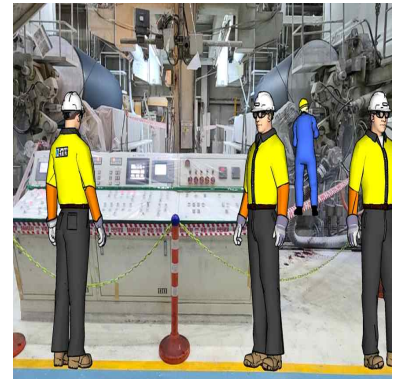
발생원인

1. 끼임 위험점에『덮개』등을 설치하지 않음

- 기계·설비의 작동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인 코팅 헤드암과 캐리어벨트 휠 프레임 사이에 덮개, 울 등을 설치하지 않아 정비·점검·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하던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끼임.

2. 『정비·점검·청소』등의 작업 시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음

- 코팅 머신 등 기계·설비의 정비·점검·청소 등의 작업 시에 다른 작업자가 그 기계·설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동장치에「잠금장치(Lock Out)와작업 중 전원 투입금지」등의「표지판(Tag Out)」설치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함.



<재해발생 상황도>

예방대책

1. 기계·설비의 끼임 위험점에『덮개, 울』및『연동장치』설치

- 기계·설비의 작동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덮개, 울 등을 설치하고,
- 덮개, 울 등은 기계·설비의 전원과 연동 설치하여 덮개 등을 해체할 경우 기계·설비의 운전이 정지되는 구조로 하여야 함.

2. 기계·설비의『정비·점검·청소 등』작업 시 방호조치 철저

- 코팅머신 등의 기계·설비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·설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(Lock-Out)를 하고,작업 중 전원 투입금지」등의 표지판(Tag-Out)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.

※ 본 O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